물질안전 보건자료 MSDS



실리콘 에멀젼 소포제 **PSA 760**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1.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PSA 760

나. 일반적 특성 : 실리콘 농축액 **다. 제품의 용도** : 범용 소포제

라. 제조자 정보

1) 제조회사명 : 신풍산업

2) 주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율대농공단지 158-20

3) 긴급 연락 전화번호: 055-673-4420

마. 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상동 **바. 작성일자** : 2012. 07. 16.

사.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 1차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관용명} 함유량% (w/w)

_ _ _

* 위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은 유해하지 않은 성분이거나 영업비밀 성분임

3. 위험, 유해성

- 가. 긴급한 위험,유해성 정보 : 삼키면 유해함.
- 나. 눈에 대한 영향: 직접 접촉은 가벼운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 **다. 피부에 대한 영향** : 단기간 단일 노출시 주요한 자극은 예상되지 않음.
- 라. 흡입시의 영향 : 호흡기를 약하게 자극함.
- 마. 섭취시의 영향: 일반적인 사용시 섭취로 인한 유해성이 낮음.
- 바. 만성징후와 증상 : 눈, 피부, 흡입, 섭취시의 영향 참조

4. 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 갔을 때**: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0 20분간 화학물질이 남아 있지 않을때까지 씻어낸다. 눈꺼 풀속까지 완전히 씻어내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단을 받을것.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응급조치 필요 없음.
- 다. 흡입했을 때 : 응급 조치 필요 없음.
- **라. 먹었을 때** : 즉시 흐르는 물로 입안을 씻어내고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숙련된 의료인에 의하여 기관 내 삽입이나 위 세척 여부를 결정할 것.
- **마. 의사의 주의사항** :증상에 따라 치료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 **가. 인화점** : 100°C closed cup. **나. 자연발화점** : 자료 없음.
- 다. 최저폭발한계치/최고폭발한계치(VOL. %) : 자료 없음.
- **라.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사항 해당없음
- 마. 소화제 : 대형 화재시 건조 화학물질, 포말소화제나 물 스프레이를 사용함.

소형 화재시 이산화탄소, 건조 화학약품 또는 물 스프레이를 사용함.

물은 화재에 노출된 용기를 식히는데 사용될 수 있음.

바. 소화방법 및 장비 : 지역 비상계획에 따라 대피나 격리가 필요한지 판단 할 것.

물 스프레이를 사용해 화재에 노출도니 용기를 식힐 것.

화학물질이 관련된 대형화재 진화시 개인호흡기와 보호복을 반드시 착용해야함.

- **사.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탄소산화물과 불완전 연소도니 탄소화합물 극소량,이산화 규소,질소산화물, 포름알데히드
- 아.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 자료 없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호흡기구 및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것. 위험지역을 격리 시키고 출입 금지할것, 유출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말것. 모든 발화원(열, 스파크, 불꽃등)은 즉시 제거하고 불이 붙을것에 대비해 소화기를 준비할것.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오염물질을 즉시 제거하고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유출된 경우는 둑을 쌓아 둘러싸고 다른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한다. 토양 또는 수중유출을 막을것.
- 다. 정화 또는 제거방법: 건조모래,보루, 그외의 불연성인것에 흡착시켜 회수하고 밀폐된 폐기용 용기에 담아 폐기 할것. 충격, 정전기로 인해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의 용구를 사용하여 회수 할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 요령: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작업하고,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내화학성이 있는 장갑, 보호안경, 보호의를 착용할것. 정전기,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할것. 모든 점화원(열, 스파크, 불꽃) 등과는 격리하여 사용할것. 탱크 내부등의 밀폐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밀폐장소 특히 밑부분까지 충분히 환기 시킬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것. 밑부분까지의 환기가 어려울 경우는 송풍마스크(산소를 공급하는 마스크)를 착용할것. 액체의 운송, 퍼올리거나 교반등의 장치에는 접지를 하도록 할 것. 정전도장을 실시할 경우에는 통전신발을 착용할것. 취급후에는 손과 얼굴등을 잘 씻고, 휴게실등에 장갑등 오염된 보호구를 가지고 들어가지 말것.
- 나. 보관방법 : 혼합 위험성이 있는 물질과는 격리시키고 산 또는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할것. 열, 스파크,불꽃 등과는 격리할것. 정전기 발생이 없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할것.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용기는 밀폐시켜 놓을것.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할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공학적 관리방법 :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소 배기장치 또는 희석식 배기시설을 설치할 것.
- 나. 호흡기보호 : 유기용제 정화통을 장착한 화학용 보호구를 착용할것. 건조도막을 샌딩등으로 제거할 경우는 분진 및 가루등에 적합한 호흡 보호구(방진,방독,송기,여과식마스크 등)를 착용할것.
- 다. 눈 보호 : 비말보호 또는 분진 보호용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라. 손 보호 : 폴리에틸렌, 부틸러버, PVC 등의 유기용제 또는 화학약품이 투과하지 않는 불침투성 보호 장갑을 착용 할 것.
- 마. 신체 보호 : 폴리에틸렌, 부틸러버, PVC 등의 유기용제 또는 화학약품이 투과하지 않는 불침투성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 할 것.
- **바. 위생상 주의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할것. 작업종료시 또는 음식 섭취전 반드시 손등의 신체를 세척해야 하며, 사용한 근무복은 세탁완료후 재사용토록 할 것.
- **사. 노출기준** : 자료 없음.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반투명 액체 **나. 냄새** : 약간의 냄새.

다. pH: 6.0 ~ 8.0

라. 용해도 : 물로 임의의 비율로 희석할 수 있음.

마. 끓는점/끓는점 범위 : 100 ℃바. 녹는점/녹는점 범위 : 자료없음

사. 폭발성 : 자료없음아. 산화성 : 자료없음자. 증기압 : 자료없음

차. 비중 : 1.00

차. 전 고형분 : 자료없음 **카. 분배계수** : 자료없음

타. 점도:

파. 분자량 :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 상온, 상압하에서 안정함.

나.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 열, 스파크, 불꽃 또는 기타 발화원과 접촉하지 말것, 용기의 가열을 피할것. 증기는 폭발 가능성이 있음, 산, 염기 또는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할 것.

다.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타 유독성 탄소화합물.

라. 반응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 : 상온, 상압하에서 유해한 중합 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급성경구독성 : 3항 위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것.

나. 급성경피독성 : 3항 위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것. 다. 급성흡입독성 : 3항 위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것.

라. 아급성독성 : 자료없음

마. 만성독성: 3항 위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것.

바. 변이원성 영향 : 자료없음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

아. 발암성영향 : 자료없음 **자. 기타 특이사항** : 자료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수생 및 생태독성 : 호수나 하천 등에 처리 없이 유출시 물의 표면에 존재하며,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수생 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자연계 생물의 피부나 외부에 쉽게 부착되어 해를 줄 수 있음.

나. 토양이동성 : 자료없음

다. 잔류성 및 분해성 : 자료없음

라. 동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물관리법상 규제현황 : 폐기물관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지정(특정)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 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나. 폐기방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용기의 폐기물은 허가를 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 와 위탁계약을 하여 처리토록 한다. 소각 처리할 경우 규조토 등에 흡착시켜 개방형 소각로에서 소량씩 고온열분해 처리하여야 한다.
- **다. 폐기시 주의사항**: 무단폐기를 하지 말고, 폐기물 관리법 제 24조 시행규칙 배출자 의무사항, 정부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규정을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선박 및 항공운송법 : 인화성 물질
- **나. 운송시 주의사항**: 인화성이 크므로 화기에 주의하고, 완전 밀봉하에서 이송하되 누출시 배수/하수관/강/ 하천 유입을 막을 것.
- 다.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UN 등급: 자료 없음.

USDOT: Class3, 가연성액체

RID/ADR : 자료 없음. IMO : 자료 없음.

IATA/ICAO : 자료 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제24조
-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타부처의 화학물질관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 : 자료 없음.
- 다.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OSHA(미국산업안전보건청) : 자료 없음. TSCA(미국유해물질관리법) : 자료 없음.

CERCLA(미국종합적환경방제.보상및책임법): 자료 없음.

SARA(미국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 자료 없음.

EU(유럽연합): 자료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97-27호,1997년 10월)
- 2).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실무(산업안전공단,1996년 11월)
- 3).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실무 (산업안전공단,1996년 11월)
- 4).각 원료업체로부터 접수한 원료 MSDS
- ※ 이 MSDS는 원료 업체로 부터 접수한 원료 MSDS 를 이용하여 참조, 작성한 것으로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것으로 판단하나, 당사가 보증 책임지지 않습니다.